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선포 및 기자회견

일시 : 2002년 5월 8일 오전 11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1.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선포문 낭독
- 향후 계획 발표
- 질의·응답

2. 보도자료 목록

1. 기자회견문

2. 보도자료

-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의 역사와 현상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지지 투쟁의 방향성
- 대체복무법안 개요
- 병역법 개정의 방향성
- 향후계획

3. 참여학생단체

4기 전국학생회의 / 21세기 진보학생연합 / 사회당 학생위원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선포 및 기자회견

일시 : 2002년 5월 8일 오전 11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1.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선포문 낭독
- 향후 계획 발표
- 질의-응답

2. 보도자료 목록

1. 기자회견문

2. 보도자료

-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의 역사와 현상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지지 투쟁의 방향성
- 대체복무법안 개요
- 병역법 개정의 방향성
- 향후계획

3. 참여학생단체

4기 전국학생회협의회의 / 21세기 진보학생연합 / 사회당 학생위원회

기자회견문

한국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합리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입영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88조의 입영기피죄로, 입영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 44조의 항명죄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는 16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3,736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체포되어 3년형을 선도받았으며 2000년에는 642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매년 평균 5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서 명시된 ‘양심의 자유’에 의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 이를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고 대체복무법을 제정하는 한편, 구속수감 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들을 사면복권해야 하는 것은 당위이다.

97년 자료를 기준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남한, 북한, 중국, 필리핀, 이집트, 이스라엘을 비롯한 48개국에 불과하다. 더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3년 징역이라는 비인도적인 형량을 부과하는 나라도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3일 18일~4월 26일 개최된 제 58차 유엔인권위원회회의의 결정을 승인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유엔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사상·양심·종교적 자유에 근거한 기본적 인권 중 하나”임을 확인한 77호 결의를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국제적인 무책임함에 다름아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은 절대 종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설령 이 권리가 국가와 상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할 수 없는 것이다.

250만 대학인의 절반인 남성이 군대에 가야한다. 또한 군대에서 양산된 문화는 군대에서 대학으로 유입되어 대학인의 절반인 여성을 억압하는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군대는 대학의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규정하는 커다란 사회제도인 것이다. 대학에서부터 시작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지지는 한국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본질적 도전이 될 것이며, 이를 바꿔나갈 힘이 될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의 문제는 단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대치 상황을 빌미로 끝없는 대결을 양산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임과 동시에 한국전쟁이후 부풀려질데로 부풀려진 제반 전쟁요소의 문제이다. 이에 대학인의 목소리를 모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해야 하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실천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를 위해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각 대학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지지하는 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라.
-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복무법’을 제정하라.
- 3) 현재 수감 중이거나 이미 처벌받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즉각 사면·복권하라.

2002년 5월 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참석자 일동.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선포문

250만 대학인의 절반인 남성은 대학시절에 군대에 가야한다. 한창 자신의 활동을 설계하고 미래를 예비해야 하는 황금같은 시기에 군대에 반드시 가야하는 현실은 벌써 반백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군대는 비단 남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은, 군대에서 대학으로 유입되며 동시에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군사주의적 문화/남성중심적 문화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군대는 하나의 성역을 이루고 있으며, 철옹성처럼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억압적인 군대의 기억도 군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 앞에서는 자기 보호의 논리로 강화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히려 더욱 군대제도에 의해 피해를 입어야 하는 남성들이 형편없는 대우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군가산점제 논쟁에서 보듯 군대를 옹호하는 자기 방어의 논리가 지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 우리 사회의 군대에 대한 규정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직접 군대 문제에 맞닥뜨린 대학인이 발언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우리나라의 군대는 바뀔 수 없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학인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고민하며 반전평화를 위한 실천을 벌여나가고자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대치 상황을 빌미로 끝없는 대결을 양산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이며, 동시에 한국전쟁이후 부풀려질데로 부풀려진 제반 전쟁요소의 문제인 것이다. 그 누구보다 군대에 많은 규정을 받고 있는 대학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서 이를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대학인은 보다 근본적인 평화의 관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사고하며 이를 위한 실천을 벌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아직 우리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선부르다.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부당한 침해 받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헌법조차도 국가안보의 논리 속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언컨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이 조속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언제나 선도적 실천 속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일구어왔던 대학생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위한 실천을 벌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대학생들은 앞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 문제를 보다 대중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실천을 감행할 것이다. 이 곳에 모인 대학생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1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이를 보다 대중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02년 5월 8일

1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1.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

■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 거부

한국에서 양심상 이유로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등 군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서 처벌된다(병역법 제87, 88조) 이 경우 1년 6월 내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군대에 입대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자가 양심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총기를 수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된다(군형법 44조) 이 경우 징역 3년형이 선고되어 확정과 함께 민간인으로 전역된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91년 이후 종교적 양심으로 인한 병역거부자 3,73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한해 평균 약 400명의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마다 이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의 수가 92년 220명, 93년 277명, 94년 233명, 95년 437명, 96년 355명, 97년 403명, 98년 474명, 99년 513명, 2000년 642명으로 90년대 초에 비하여 3배 정도 증가하였다. 현재 16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다.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제7안식일교 등과 같은 종교적 이유 이외의 역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군복무 도중 어떠한 이유에서건 병역을 거부하는 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선택적 병역 거부)의 흐름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문무대·전방입소철폐 투쟁·군인들의 각종 양심선언 등 이러한 흐름은 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도 커다란 부분을 차지해 왔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특수한 법적 이익과 상충하게 되었을 시에는 보장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우리대법원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판례에 그 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0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총발기를 거부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여 군형법 44조 항명죄위반으로 그 당시 법정 최고형인 2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90년대 초부터 상관이 총을 두 번 주어 다 받기를 거절하면 경합범이라고 하여 최고형의 2분의 1을 더 늘려 3년형을 선고하였다. 먼저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군복을 지급할 때 총을 주고, 다음날 훈련할 때 또 다시 총을 주어 거절하면 두 번 거부로 간주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계속 유효하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우습기는 마찬가지였다. 1999년 9월 14일 선고한 92도1534 판례는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도 여러 번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많은 군법무관들이 이는 너무 어색한 법 적용이라고 지적하자, 94년 아예 군형법 44조 항명죄의 최고 형량을 3년으로 높였다, 그뒤로 지금까지 계속 3년형을 선고하고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군 의무 복무기간은 2년 6개월에서 2년 2개월로 줄었는데, 집총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들의 형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94년 항명죄의 최고형량을 3년형으로 늘린데 대한 입법취지에는 특정종교의 병역거부를 억제하기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군형법등 형사벌의 법정형을 올리면서 특정종교라는 그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취지만 봐도 어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94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형량을 높인 것이 위 입법취지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 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에 불을 지피다

2001년 12월 17일 스물여섯살의 불교청년이 국가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가에서 지정한 입영일을 맞은 그는 논산행 입영열차 대신에 지하철을 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다. 그의 큰누나와 여동생이 함께 했고, 오씨 옆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민변)의 이석태 변호사가 배석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살생과 생명존중의 종교적 신념과 평화·봉사의 인생관에 따른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민간대체봉사제도' 도입을 호소했다.

여호와의 증인, 제7안식일교 등의 종교에 국한되어 인식되어 온 양심적 병역거부가 최초로 불교신자를 통해서 선언된 것이다. 불교 사회단체는 종교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고, 곳곳에 있는 인터넷 게시판은 그 청년 '오태양의 이름을 통해서 무척 뜨거운 격론이 오고 갔다. 또한 법원에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음을 인정하여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오태양의 두 번째 영장이 신청되었던 2002년 2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의 대한불교청년회 강당에서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대한불교청년회 등 13개 불교 사회단체가 모여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불자들의 인생지표인 오계를 보더라도 가장 먼저 생명을 존중하는 불살생 계율부터 수계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따르는 행위이며 소수자 인권차원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김동훈 운영위원장은 "13개 단체를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불교계 차원의 대책기구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자의 병역거부 선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계종 중단도 조금씩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한 관계자는 "한국에는 호국불교라는 독특한 전통이 있어 군복무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어쨌든 불살생 계율이 있는 만큼 최근의 대체복무제 논의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불교계의 기자회견에 이어 기독교계도 최초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2002년 2월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의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목정평)가 공동 주최하는 공개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250여명이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3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찬성쪽에는 오태양씨와 여호와의 증인인 성우 양지운씨, 목정평의 정진우 목사가 참석했다. 반대 입장으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삼경 목사, 전역 군목인 장병선 목사, 국방대학원 김병렬 교수가 나섰다.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KNCC와 목정평은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목정평의 정 목사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지만 인권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인되었다"면서 "목정평은 이른 시일 안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입법 논의가 한기총을 비롯한 기독교계의 반발로 좌절된 바 있어 KNCC를 비롯한 기독교계의 입장 발표가 주목되고 있다.

2002년 2월4일 오전 11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준)의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리고 맞은 편에는 민주참여연대네트워크연대와 활빈단 회원 20여명이 기자회견에 맞춰 규탄집회를 열었다. 연대회의 측은 오히려 규탄 집회를 반기는 분위기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관심과 침묵이었다"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사실은 그만큼 공론화가 진행됐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찬반양론의 격돌이 거세지고 있다. 때맞춰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도 '연대회의'의 발족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연대회의'에는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등 군폭력 피해자 단체,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등 종교단체,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다양한 영역의 29개 사회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예닐곱개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돼오던 양심적 병역거부 모임이 크게 확장된 것이다. 연대회의는 발족과 더불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지지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1천인 선언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 영화인 명계남씨 등 각계 인사 1552명이 참여했다.

연대회의측은 “앞으로도 거리서명 활동 등을 통해 지지 선언자들을 늘려갈 것”이며, 그 외에도 국제 심포지엄, 수감된 거부자들의 인권침해 감시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당장 올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UN인권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 상황을 알린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이번 UN인권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서, 이미 연대회의는 민변 명의로 한국 상황에 대한 서면진술서를 제네바 사무국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연대회의 측은 “1600여명이 수감된 현실이 알려지면 UN인권위원회가 한국에 특별보고관을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이 파견돼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면 한국 정부에 상당한 압력이 된다. 연대회의는 오태양씨 등 도주의 우려가 없는 병역거부자들의 불구속 수사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지난 2월15일 오후 4시. 불구속 결정으로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오태양씨는 성북구의 빈민 어린이집 ‘희망학교’로 향했다. 오씨는 빈곤층 노인 지원기관인 ‘자비의 집’과 ‘희망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구속되지 않는 한 어른들을 공양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얻은 불구속의 자유가 무죄의 자유로 이어질까. 앞으로 벌어질 오씨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 최정민, 2001.10.13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임종인·지기룡, 2001.5.31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의 역사와 현상황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997년의 이회창 당시 집권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징집 관계 파문은 병역비리에 대해 한국 사회의 축적된 분노를 보여주었다. 돈 있고 백 있는 이들은 다 빠지고 힘없는 이들만 군대에 가는 불평등한 사회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 깊게 자리잡혀 있는 가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1999년 12월 23일의 대법원의 군필 남성의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은 남성들의 격렬한 반발과 소송 당사자나 위헌판결을 옹호하는 여성에 대한 마냥사냥식의 대응을 낳으면서 상황이 진행되었다 (주간동아 2000, 1/20. 정진성, 2000).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두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군사 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는 정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되는 사건이라 할 만하다. 두 사건 모두 엄청난 사회적 폭발력을 갖고 매우 민감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특징은 징병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매우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국 사회에서 징병제는 뿌리깊은 민족 주의, 남북한 대치상황이라는 상황 논리 등을 등에 업고 국민적으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징병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발본적인 문제제기나 존재에 대한 도전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채, 논의 자체가 봉쇄된 채로 1949년 이후 50년이 넘는 세월을 존속해왔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징병제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적 시민권 개념에서의 징병제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

■ 양심적 집총거부 인정의 역사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 조문의 해석으로부터 "작위 의무로부터의 자유"를 도출 할 수 있다. 양심적 집총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는 인권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법률적 해석을 보편적이게 만드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세계에서 가장 처음 명문화된 집총거부권에 대한 헌법 조항은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 제 8조이며 조문은 다음과 같다. "집총을 하는 것에 양심적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대체복무를 하려한다면 집총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 양심적 집총 거부권을 "헌법상 권력"로 인정한 역사

· 미국의 경우

1776년 펜실베이니아주 헌법

1776년 델라웨어주 헌법(제10조)

1777년 버몬트주 헌법(제19조)

1784년 뉴햄프셔주 헌법(제13조)

· 서유럽의 경우

- 독일 :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헌법 명문화가 1949년 독일 헌법 제 3조

- 포르투갈 : 1976년 헌법 제41조 5항
- 스페인 : 1978년 헌법 제41조 5항

· 동유럽(구 소련 붕괴후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다.)

- 크로아티아 헌법 제47조
- 슬로베니아 헌법 제25조 2항
- 체코공화국 헌법 제15조 3항
- 러시아 헌법 제28조

· 기타

- 브라질, 우르과이, 수리남, 잠비아 등.

▶ 국제법적 인정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

18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예배·의식·행사·강론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엔의 경우는 1987년 유엔 인권이사회 46호 결의에서 "종교, 윤리, 도덕 또는 이와 유사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다.

유엔에서는 1989년 59호 결의, 1993년 84호 결의, 1995년 83호 결의(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망명권을 인정했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으며, "1998년 77호 결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총괄적 결의의 형태로 제출되었다. 양심적 집총 거부권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양심적 집총 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및 ICCPR 제18조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신념의 본성을 차별하지 말고, 특정사안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의사결정기구를 만들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비전투적이거나 민간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징병적 성격을 띠지 않는 대체 복무제를 실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각 나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투옥하지 않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경제·사회·문화·시민 또는 정치적 권리 등에서 차별해서는 안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유럽 인권 규약 제9조에 근거하여 유럽에서는 1967년 '유럽회의'에서 자문의회가 337호 결의를 냈다. 이리하여 유럽인권규약 9조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 인정하게 된 것이다.

■ 각 나라별 양심적 병역 거부 보장 현황

97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에 의하면 각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보장현황은 다음과 같다.

징병제가 없는 나라	영국, 미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르과이 등 69개국
징병제가 있으나 임의적인나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세네갈, 13개국
징병제가 있으나 실시하지 않는 나라	엘살바도르, 나미비아 2개국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국가	남·북한,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일랜드,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알바니아, 그루지아, 알제리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쿠바, 페루, 혼두라스, 등 48개국
징병제가 있으나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코공화국, 헝가리, 케이프베르드, 사이프러스 등 25개국

대체 복무제를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대체복무 구체활동, 환자수술, 소방업무,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환경미화, 조경, 농업, 난민보호, 청소년 보호센터,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호, 감옥 및 갱생기관 근무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보통 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의 1~1.4배 이다.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지시 투쟁의 방향성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헌법 제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와 병역법 3조 병역법 제3조 1항 :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에서 국방의 의무는 의무로서 규정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게되는 해당법률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즉 종교적 이유에 의해 징집 거부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병역법 제 88조 입영기피죄”와 “군형법 제 44조 항명죄”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특수한 법적 이익과 상충하게 되었을 시에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91년 이후 현재까지 4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징집 거부했으며 이중 3736명이 항명죄로 구속되었다. 지금도 매년 400여명 씩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생겨나며, 항명죄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최고형인 3년의징역을 선고받으므로 현재 약 1600여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의 세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위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
- 더불어 그동안 처벌되었던 수많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사면복권되어야 한다.

(2) 병역법 개정/대체복무법 제정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인권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개정과 대체복무법 제정이라는 현행법 수준에서 일보전진을 이룰 수 있다. 물론 제도개선적 투쟁의 성격을 지니는 이러한 투쟁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다 근본적인 군대-징병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이다.

징병제는 상시적 전쟁 준비를 의미한다. 전 국민이 전쟁에 동원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적으로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방이 튼튼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전쟁의 가능성을 몸에 안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인접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관계는 상시적 전쟁의 위기를 수반함과 동시에 과도한 군비경쟁의 무한 순환을 낳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평화군축으로 가능할 뿐, 군사력의 증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화의 상태는 적극적인 군축으로 가능하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군대와 징병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반백년 이상 이어진 분단체제 속에서 끝없는 긴장을 양산해왔다. 비정상적인 국가 대결체제 속에서 양국의 정권은 자신의 체제를 보다 공고히 만들어갔다. 정권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일 수 밖에 없었던 군대는 하나의 성역이 되었다. 군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곧장 안보논리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국가주의적 통제에 예외는커녕 군대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웠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야 문제제기 되는 것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결정이 대법원의 판결이 될 정도로 후진적인 인권의 현실은 하루속히 바꾸어내야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이유에 의해 병역을 거부 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적 이유에 의해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지 않았으며, 국가가 가하는 처벌을 수십년간 감내해왔다. 현재 한국에 수감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1640여명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투옥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또는 형제가 같은 죄목으로 차례차례 투옥된 경우가 약 60건이나 되는 반인륜적인 탄압마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종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다.

일반 민주주의적인 요구조차 압살당하는 것은 과거 한국의 역사에서 비일비재했던 일이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는 아직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문제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척도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인권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병역법 개정과 대체복무법 도입을 통한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 병역거부자의 인권

병역거부자의 인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동안의 인권이다.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은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동안의 인권이다.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은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동안의 인권이다.

1.1 병역거부자의 인권

병역거부자의 인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동안의 인권이다.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은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동안의 인권이다.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은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동안의 인권이다.

1.2 병역거부자의 인권

병역거부자의 인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동안의 인권이다.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은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동안의 인권이다.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은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동안의 인권이다.

1.3 병역거부자의 인권

병역거부자의 인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동안의 인권이다.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은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동안의 인권이다.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은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동안의 인권이다.

1.4 병역거부자의 인권

병역거부자의 인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동안의 인권이다.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은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동안의 인권이다.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은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후의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한 동안의 인권이다.

4. 대체복무법안 개요

대체복무법안은 기본적으로 천정배의원안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몇 가지를 수정하였다. 천정배의원안의 대체복무법안은 관할관청, 신청과 결정, 대체복무영역(시설)의 지정, 징계와 처벌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나 입법연구단에서는 이를 기본적으로 이원화시켰다. 대체복무를 병역의무의 이행수단으로 파악하지는 근본전제에 출발하였다.

대체복무역을 병역의 일종으로 조정함으로써 병역법은 대체복무영역, 대체복무기간, 대체복무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 대체복무자의 각종복무부담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체복무법(또는 대체복무자인정절차법)은 대체복무자 판정절차, 관할기관을 규정하는 순수한 절차법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독일의 병역거부법에 해당한다.

1. 대체복무위원회

1) 관할기관

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대체복무판정과 대체복무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보유하며, 대체복무제도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책결정기능도 부여하였다. 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산하지방위원회로 구성하고, 군복무중인 자의 대체복무신청을 관할하는 지방위원회로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2) 보건복지부

대체복무판정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UN인권위원회의 취지를 존중하여 대체복무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를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국방부/병무청과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대체복무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소속하는 위원회로 하였다. 독일의 예가 이와 비슷하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국무총리 산하로 고려하였으나 대체복무영역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3) 위원의 자격

대체복무위원의 자격은 비교적 개방적으로 설정하였다. 교수, 변호사, 성직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체복무처분은 헌법상의 권리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위원장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위원의 신분은 엄격하게 보장하도록 하였다.

4) 중앙위원회 — 재심기관

중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총괄한다. 구체적인 판정을 제외하고 지방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대체복무판정에 대하여 재심기관으로 상정하였다.

5) 지방위원회—일차적 판정기관

지방위원회는 대체로 지방병무청에 대응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지방위원의 자격, 지방위원회의 구성, 신분보장은 중앙위원과 같도록 하였다. 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일차적인 판정권을 갖도록 하였다. 지방위원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판정권만 부담시켰다.

6)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소위원회

위원의 숫자는 중앙위원회는 7인으로, 지방위원회는 5인으로 하였으며, 사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하였다. 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징계소위와 판정소위로 나누었다. 그러나 결정은 전체위원회의 명의

로 하도록 하였다.

2. 대체복무자 인정절차

1) 신청사유

① 신청사유

대체복무의 신청사유는 포괄적으로 양심적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종교와 관련된 양심이지만, 그렇다고 종교의 자유에 국한한다면 지나치게 협소하게 주류종교집단의 반발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윤리적 양심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충실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양심에는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평화주의적, 인도적 양심까지 포괄하도록 하였다.

② 전쟁거부정도

전쟁거부정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 문제는 직접 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전(자위전쟁)과 불법적인 공격전쟁의 구별, 국내전쟁과 해외원정의 구별, 재래식전쟁과 핵전쟁의 구별, 동족전쟁과 이민족간 전쟁의 구별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자만이 병역거부자로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도 이 점을 병역거부법에 명기하고 있다.

2) 신청기간

징병검사후 입영기일 30일전까지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군인 기타 병역의무이행중인 자의 경우

복무중인 자는 입영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 특히 현역군인인 경우에는 매우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1년을 타협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4) 신청양식

독일의 경우는 대체복무신청서(관인서식), 이유서(자유서식), 이력서(자유서식)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표준양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5) 심사절차의 엄격성문제

심사절차는 엄격하게 할 것인지 비교적 느슨한 서류심사로 할 것인지는 확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절차의 엄격성여부는 대체복무신청을 철저하게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대체복무요원 정원제와 같은 군인력배치프로그램을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상관적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보았다.

6) 재심과 소송

지방위원회의 각하 내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하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중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재심이나 추가적인 불복수단을 배제하였다(불가피하게 타협적으로 만들었다)

7) 결정시한

판정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군인인 경우에는 보다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일정한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3. 경과조치

1) 사면복권문제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된 자의 범죄기록의 말소를 포함하여 사면복권을 규정하였다.

2) 복역중인 자의 자동전환문제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집행중인 자가 만기출소를 목전에 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일단 신청한 경우에만 대체복무인정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대체복무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완전거부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중에 사면복권의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3) 기간산입

구속되었거나 복역중인 자가 대체복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구속기간 및 복역기간을 대체복무기간에 산입하였다.

4. 완전거부자

완전거부자의 인권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이지만 이 법에서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고려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정한 봉사활동을 보다 장기간 하도록 하는 대안(독일의 예)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불가침적 인권인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병역의무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도입된 대체복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복무"라 함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상의 이유로 군사훈련(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자에게 병역법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의무를 말한다.
2. "대체복무요원"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대체복무처분을 받고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사회적 영역에서 공익에 이바지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집"이라 함은 대체복무처분을 받은 자에게 복무영역, 장소, 기간을 지정하여 대체복무활동을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체복무시설"이라 함은 대체복무요원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공적 및 사적 시설 또는 활동단체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처분을 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대체복무위원회

제3조(대체복무위원회) 이 법에 의한 대체복무관련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방병무청 소재지별로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역군인이 대체복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하는 지방위원회를 중앙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제4조(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철학·종교학·심리학·법학·사회학·정치학·평화학 등을 전공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종교계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4. 4급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위원을 상임으로 보한다.

④중앙위원회는 판정소위원회와 징계소위원회를 둔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소위원회의 위원은 되며, 소위원회의 결정은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⑤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소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은 위원을 사무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중앙위원회의 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대체복무 신청의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
2.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징계조치의 재심
3. 대체복무시설의 지정처분
4. 대체복무제도의 개선 및 제안권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③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은 해임되지 않는다.

제7조(회의와 결정) 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지방위원회의 구성) ①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위원수를 확대할 수 있다.

②위원은 제5조 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은 전체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④위원의 신분보장과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대해서는 제6조와 제7조가 준용된다.

⑤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위원장이 통괄한다.

제9조(지방위원회의 권한) ①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판정한다.

②위원회는 기타 업무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신청인과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신청인의 참고인으로 된 경우

제12조(별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운영세칙)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대체복무자의 판정절차

제14조(신청) ①병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1급 내지 5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처분을 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신체검사일로부터 입영기일 30일 이전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위원회에 대체복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신청에 있어서 대체복무신청서, 이유서,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신청에 대한 판정을 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한다.

④군복무중인 자는 입영후 1년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결정) ①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체복무처분의 판정을 한다.

②대체복무처분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당사자의 희망·자질·학력·적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체복무영역에 대한 지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14조 1항의 경우에는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14조 4항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④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 ①제15조 1항 1호와 2호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의 결정방식은 기각 또는 인정으로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고, 기타 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

④지방위원회의 대체복무 영역지정의 결정을 다투는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위원회는 2항의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7조(심사상의 조치) ①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

3.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

4.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 것

②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청이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있거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인이 이 법이 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그 구속기간이나 복역기간을 대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신청에 따라 사면 복권된다. 제1항에 해당하지만 대체복무를 신청하지 않는 자도 출소후 신청에 따라 사면복권된다.

③이 법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의 공포후 시행일 전이라도 그 사유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징집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후 30일이 도과한 후에도 연기신청자가 대체복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집연기는 종료한다.

5. 병역법 개정의 방향성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에 관한 일반법 제3조에는 “이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병역 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병역법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 규정할 수 없다.

병역의 종류에는 이미 특례적 조항이 많이 삽입되어 있다.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충역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국가기관등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익요원이 있으며 예술체육분야, 개발도상국가 지원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공중보건의사, 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보충역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법의 보충역에 대체복무요원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부족한 규정은 대체복무법 제정을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

요약하면, 보충역의 일종으로서 대체복무요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체복무제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까지 확장 적용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가 적용되는 경우, 복무영역으로 사회복지시설 봉사업무를 규정하고 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며 대체복무요원은 교육소집에서 제외하며, 대신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받게 된다. 복무기간은 36개월 이내로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입법연구단에서 논의중이다.

병역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정을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 대체복무제는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자세한 내용의 경우는 따로 병역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대체복무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풍부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병역법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p>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p> <p>9. "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p> <p>第5條 (兵役의 種類)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역:(생략) 2. 예비역:(생략) 3. 보충역: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 의사·정병전담 의사·국제협력 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생략) 5. 제2국민역:(생략) 	<p>第2條 (定義)</p> <p>(중략)</p> <p>9의2. 대체복무요원이라 함은 대체복무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p> <p>第5條 (兵役의 種類)</p> <p>(중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보충역: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 의사·정병전담 의사·국제협력 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현행법	개정안
<p>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26-33) 제2절 공중보건역의 복무(34-35의2)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36-43)</p> <p>第42條 (公益勤務要員등의 服務期間短縮)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범위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1997.1.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역병의 복무기간단축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p>第43條 (公益勤務要員등의 實態調査)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등에 대하여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p>	<p>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26-33) 제2절 공중보건역의 복무(34-35의2)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36-43) 제4절 대체복무요원의 복무(43의2-43의4) (신설)</p> <p>第42條 (公益勤務要員등의 服務期間短縮)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범위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역병의 복무기간단축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개정) <p>第43條 (公益勤務要員등의 實態調査)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등에 대하여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p>

현행법	개정안
	<p>제4절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신설)</p> <p>第43條의 2(代替服務要員의 編入)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체복무위원회로부터 대체복무 판정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한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p> <p>第43條의 3(代替服務要員의 業務) ①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 보호, 지원 등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교육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한다.</p> <p>④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 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p> <p>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43條의 4(代替服務要員의 身上移動通報 및 處理) ① 사회복지부장관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p>

현행법	개정안
<p>第55條 (教育召集對象等) ① 教育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에 대하여 60일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이내로 한다.</p>	<p>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명령 또는 정당한 복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p> <p>②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하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처분하되, 1회 경고처분을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p> <p>第55條 (教育召集對象等) ① 教育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대체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에 대하여 60일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 제외)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이내로 한다.</p>
<p>第58條 (醫務·法務·軍宗將校등의 兵籍編入) ①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p>第58條 (醫務·法務·軍宗將校등의 兵籍編入) ①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현행법	개정안
<p>3.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서 소속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 (②항, ③항 생략)</p> <p>④ 제1항·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p>第73條 (復學保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p> <p>第75條 (報償 및 加療)④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p>	<p>④ 제1항·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종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사에 반하여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없다.(개정, 단서 신설)</p> <p>第73條 (復學保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요원)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p> <p>第75條 (報償 및 加療)④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p>

현행법	개정안
<p>第75條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①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후략)</p>	<p>第75條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①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후략)</p>
<p>第88條(入營의 忌避) (내용 생략) 第89條(公益勤務要員등의 代理服務) (내용 생략) 第89條의2(公益勤務要員등의 服務離脫) (내용 생략)</p>	<p>第88條(入營의 忌避) (내용 생략-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한 내용) 第89條(公益勤務要員등의 代理服務) (내용 생략-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한 내용) 第89條의2(公益勤務要員등의 服務離脫) (내용 생략-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한 내용)</p>

5월계획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기획

▷ 일시 : 2002년 5월 8일 11시

▷ 장소 :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

▷ 명칭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지지 및 1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기자회견의 취지

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98년, 2000년 결의에 이어 다시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논의되었다. 한국정부는 유엔의 결의를 존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확장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 이를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고 대체복무법을 제정하는 한편, 구속 수감 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들을 사면 복권해야 하는 것은 당위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은 절대로 종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억압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 권리가 국가와 상충되는 경우이라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250만 대학인의 절반인 남성이 군대에 가야하고, 군대문화는 군대에서 대학으로 유입되어 또한 절반의 여성을 억압하는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의 문제는 단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대치 상황을 빌미로 끝없는 대결을 양산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임과 동시에 한국전쟁이후 부풀려질대로 부풀려진 제반 전쟁요소의 문제이다. 대학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서 이를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선포문 낭독
- 향후 계획 발표
- 질의-응답

2. 1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기획

▷ 일시 : 2002년 5월 8일 12시 30분~13시 30분

▷ 장소 : 혜화역 4번출구 베스킨라빈스 맞은 편

▷ 명칭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 1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취지

1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진행한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소속 단체들과 함께 10만인 서명운동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행사이다. 짧고 간결한 결의의 마당으로 이후 수요캠페인과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

▷ 행사기획

- 민중의례
-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산다는 것은...
-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결정시안에 대한 요약과 한국의 상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선포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3차 수요캠페인

- ▷ 일시 : 2002년 5월 8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 ▷ 장소 : 혜화역 4번출구 베스킨리빈스 맞은편

4. 이후 실천계획

이후 수요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 5월 8일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 1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 5월 1차 수요캠페인

▶ 5월 15일

- 5월 2차 수요캠페인

▶ 5월 22일

- 집중실천 : 국방부 인간 뿌이기 행사<가> (장소, 시간 미정)

▶ 5월 24일

- 오후 2시 자전거 대행진
- 오후 7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문화제(연세대학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는 해당 국가의 인권 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결의안을 '전원합의'로 통과시킴으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하는 보편적인 인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그동안 외면되어 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현 인권주소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으로 가고 있으며, 현재 전국 교도소에는 1700여명이 수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와 인권 침해는 더 이상 방관되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안으로서 군사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민간사회봉사활동의 대체복무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도의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서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대체복무제 입법청원시 국회에 함께 제출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대신 사회봉사의 기회를!!

번호	이름	주소	이메일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www.corights.net